

●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-126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년 06월 18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- 1. 건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 및 제26조 제3항, 29조제1항제9호, 제29조제3항, 제29조제4항

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, 제29조제1항제9호 및 시행규칙 제20조2항1호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
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김o준	1999.03.05.	광주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	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등	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, 출석통지 2회 불응	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'26.06.18. ~ '26.07.02.

(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: 2026.07.03.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(2026.07.12.))

5. 의견제출 안내 : 공고대상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(5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 (062-712-4520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모다은(☎062-609-85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주 지방 고용 노동 청 장 (관인생략)